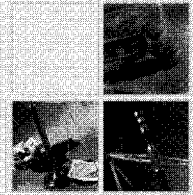


# 가스시설 시공자보험 특별약관 확정

## 대당 1,223원 결정, 보험 상품 시판



도시가스용 보일러 시공자에 적용되는 가스시설 시공자보험 특별약관이 확정됨에 따라 시공자보험 의무화가 사실상 시작됐다.

보험개발원은 가스배상책임보험 중 가스시설 시공자특약을 신설해 지난 10월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으며 보험사들도 11월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도시가스용 가스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인가된 가스시공자 보험특약에 따르면 기본보상한도가 대인배상 사망 1인당 6,000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3억원일 때 기본보험료는 대인배상이 930원, 대물배상이 293원으로 총 1,223원으로 확정됐다.

시공대수가 많은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200대 이상은 5%, 500대 이상은 7%, 1,000대 이상은 10%로 할인율을 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약관은 가스시설 시공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스시설 시공작업의 수행 또는 시공작업의 수행을 위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인한 사고'를 손해배상 범위에 삽입했다.

또한 시공자가 사업을 정리해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양도시 보험이 승계되도록 '피보험자가 시공한 가스시설이 타인에게 양도

된 후 그 가스시설의 시공자로서 인한 사고'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별약관은 이외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을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담보를 신설했다.

보험료 미납 등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종료되어도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가스시설 시공자 보험의무화는 지난 5월 27일자로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3개월 뒤인 8월 27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가 늦어져 시행이 계속 지연됐었다.

산자부는 9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도시가스사업법의 보험가입 대상을 도시가스용 가스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로 정하고 3억원 한도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바 있다.

한편 산자부는 가스시설 시공자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스보일러 시공확인서에 첨부토록 하는 도법 통합고시 개정안을 11월 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요식행위로 고시 개정 전에도 보험가입의무화는 시행중이라고 밝혔다.